

해외주식 mini 신탁 약관

제정 2021.07.19

개정 2021.12.10

개정 2021.12.27

개정 2022.06.27

제1조(약관의 목적)

- ① 이 약관은 고객과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간에 ‘해외주식 mini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해외주식 mini 신탁’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해외주식 mini 신탁’은 고객이 위탁자로서 수탁자인 회사에게 <별첨>의 방법으로 금전을 위탁하고, 위탁한 재산으로 <별첨>의 대상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의 운용지시를 회사에게 하고, 회사는 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라 위탁한 재산을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의미한다.

제2조(해외주식 mini 신탁 계약의 성립)

- ① 해외주식 mini 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
 1.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 거주자(개인)만 가입 가능할 것
 2. <별첨>에 열거된 가입 채널별로 1인당 1개의 계약만 보유할 것
 3. ‘해외주식 mini 신탁’의 명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일 것
 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허가받은 재산과 방법으로 운용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③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고객은 본인 이름의 CMA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④ 신탁계약은 고객이 신탁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에 동의하고 신청하며, 회사가 이를 확인하고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신탁재산)

- ① 이 신탁계약에서 고객은 원화 금전으로만 설정할 수 있다.
- ② 이 신탁계약의 최소 투자금액은 없으며, 거래단위는 최소원화 1,000원 부터 1원 단위이다.
- ③ 이 계약의 '신탁재산'은 고객이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신탁계약으로 설정한 금액과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의 사유로 얻은 재산을 포함한다.
- ④ '신탁재산 총액'은 신탁재산 중 원화 금전의 총액과 원화 금전이 아닌 재산을 원화로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 ⑤ 고객의 최초 신탁재산 한도는 미래에셋증권과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거래가능 채널별로 각각 2,000만 원이며, 추가 설정 가능한 재산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양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전문투자자는 신탁재산 한도제한이 없으며,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 변경되어 신탁재산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금액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추가 설정이 불가하다.

추가 설정 가능 금액 한도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①, ② 중 큰 양의 값으로 한다.

- ① 2천만원 - 총 설정금액 + 총 해지금액
- ② 2천만원 - (전일 신탁재산 총액 + 당일 설정금액 - 당일 해지금액)

- ⑥ 제6조 제5항에 따라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채널이 종료되는 경우 제휴사 채널에서는 추가설정 및 매수가 불가하며, 계약을 전부해지하여야 하며, 제휴사 채널 종료에 따른 신탁 계약해지 절차는 제21조를 따른다.
- ⑦ 고객은 신탁기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하거나, 수탁중인 신탁금액 중 원화 금전에 대해서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출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은 잔여 신탁재산에 효력이 있다.

제4조(신탁기간)

- ①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이 성립한 후, 고객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신탁재산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수익자)

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며,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6조(신탁재산의 운용)

- ① 고객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별첨>의 대상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의 운용을 <별첨>의 방법에 따라 지시하며, 회사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다만, 고객이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하여 일시적인 자금 대여 및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고객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 ③ 회사는 고객의 운용 지시에 대하여 전산기록 보관 및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별첨>의 기준에 따라 회사가 직접 행사한다. 다만, 유상증자 등 회사가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여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앱") 이외에도 제휴사를 지정하여 본 상품의 가입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휴사를 새로 지정하거나 제휴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1. 회사가 지정한 제휴사와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회사가 지정한 제휴사의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모바일앱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조제1항에 따른 관계법령의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운용지시의 거부)

- ① 회사는 공익과 고객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객의 운용지시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29조 및 대상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해외 법규, 관련 해외 규정에 저촉 또는 저촉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의 운용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운용 지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거나, 지시의 내용을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운용 지시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때까지 운용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본조와 같이 처리한다.

제8조(임의운용의 금지)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한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대리인의 지정 금지)

고객은 본인 이외의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탁재산 운용 방법 등에 대한 지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운용 지시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 내용을 통지한다.
2. 회사는 고객이 모바일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운용내역 등의 확인)

고객이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금액을 확인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법적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13조(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4조(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5조(신탁보수)

- ① 신탁보수는 다음의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신탁순자산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재산 총액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text{신탁보수} = \text{신탁순자산평균잔액} \times \text{연 } (0.80) \%$$

- ②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보수 차감일부터 제3항에서 정한 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신탁계약일로부터 신탁계약을 해지 또는 일부 해지하는 때에 신탁 재산으로부터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이익의 계산 및 지급)

- ① 이 신탁은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이익을 계산하여 신탁원본에 가산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분기말(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신탁해지(일부해지 포함)로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3. 신탁기간 만료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 ② 신탁이익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계산일 익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7조(세금 및 비용)

〈별첨〉의 세금 및 비용을 포함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따로 요구한다.

제18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이 신탁은 고객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 발생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사업장의 폐업
3.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제19조(전부해지)

- ① 이 신탁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별첨>의 방법에 따라 전부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원화 금전 중에 해외 주식 등의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전부해지가 불가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전부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보수의 비율로 해지일 전일까지의 신탁보수를 받는다.

제20조(일부해지)

이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원본의 일부회수 등으로 일부해지가 필요한 때에는 고객은 <별첨>의 방법에 따라 계좌 내 출금 가능한 원화 금전이 있는 경우 출금신청금액 내에서 신탁계약의 일부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신탁보수를 받는다.

제21조(신탁계약의 종료)

-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종료한다.
 1. 제19조에 따라 고객이 신탁계약을 전부해지하는 경우
 2. 제 6조 5항에 따라 제휴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3. 제29조 제1항에 의해서 신탁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 ② 신탁계약이 종료할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회사는 자체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고객은 보유 해외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단,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매도하지 않은 보유 자산의 경우 회사가 모든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 ③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제10조의 방법에 따라 최종계산서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객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고객이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고객은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은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객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 ⑥ 고객이 회사로부터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다.

제23조(추가설정)

- ① 회사는 주문 및 권리행사로 발생한 환전 비용 및 수수료 각종 세금 등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회사는 신탁재산 내에서 우선 받으며, 신탁재산 내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여 고객이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위 필요경비를 위한 추가 입금이 제3조에서 정하는 신탁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추가설정이 가능하며, 한도초과가 해소되기 전에는 추가설정이 불가하다.

제24조(결제 및 재매매)

- ① 결제일은 해당 시장에 따라 상이하며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 ② 해외 주문 체결기관의 지급불능, 국내외 휴장일 등에 따라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결제 전 재매매가 가능하며, 주문가능금액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해외주식 일반)

본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한 해외주식 매매거래 일반에 대한 사항은 「외화증

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따른다.

제26조(신탁계약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해외주식 mini 신탁 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해외주식 mini 신탁’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운용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2. 회사의 책임이 아닌, 대상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해외법규 및 관련 규정 또는 거래 관행 등의 사유에 의한 운용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3.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4. 회사의 책임이 아닌, 해외주식 거래를 위하여 이용하는 해외중개사의 전산시스템에 예기치 않은 전산

장애, 네트워크 장애 등에 따른 거래 장애

제28조(사고신고 등)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고의 자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고객 및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9조(해외거주자의 거래제한 및 임의처분)

- ① 고객이 해외거주자 여부를 허위신고 하였거나 신탁 계약 이후 해외거주자로 변경 되었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의 신탁계약에 대해 해외주식 매수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보유한 해외주식을 모두 현금화하여 계약을 해지하도록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및 회사의 임의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내용을 명시하여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경우, 고객은 보유한 해외주식을 전부 매도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모두 현금화 할 수 있다.

제30조(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등)

- ① 고객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해외주식 mini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체결된 ‘해외주식 mini 신탁’계약 및 개설된 신탁계좌에 대하여 고객에게 사전통보없이 회사가 해당 ‘해외주식 mini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특약)

고객과 회사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2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하 “ 관계법규등 ”)을 준수한다.

제33조(분쟁조정)

고객과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우편, 우편, 전화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민원 상담안내 및 절차, 민원접수채널 정보 등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에서 확인 가능)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5조(관계법규등 준용)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 0| 약관은 2021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0| 약관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0| 약관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0| 약관은 2022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mini 신탁'은 해외주식을 간편하게 원화로 사고 팔 수 있는 신탁 상품입니다. '해외주식 mini 신탁'은 해외주식을 사고 팔아 발생하는 손익 외에도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구조나 위험 등에 관하여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부내용	근거조항									
신탁가입 및 신탁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 거주자만 가입가능하며, 거래가능 채널별로 1인당 1개의 신탁 상품 가입 및 거래가 가능합니다. 투자한도 : 거래가능 채널별로 각각 2,000만원 (단, 전문투자자는 가입한도 제한 없음) 신규 가입 및 해지 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td> <td>신규 가입</td> <td>계약(전부)해지</td> </tr> <tr> <td>매체</td> <td>모바일앱</td> <td>모바일앱</td> </tr> <tr> <td>시간</td> <td>24시간</td> <td>08:00~16:00</td> </tr> </table> <p>※ 신탁계약을 전부해지하기 위해서는 ① 신탁 계약 내 해외주식잔고가 '0' 이고, ② 주문 신청내역이 없는 계약에 한하여 가능</p> 		신규 가입	계약(전부)해지	매체	모바일앱	모바일앱	시간	24시간	08:00~16:00	약관 제1조 제2항 약관 제19조 제1항
	신규 가입	계약(전부)해지									
매체	모바일앱	모바일앱									
시간	24시간	08:00~16:00									
신탁의 설정/일부해지(충전/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정(충전) :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신탁가입 이후, 투자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설정(충전)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일부해지(출금) : 신탁계약 내 보유 현금을 일부해지(출금)를 통해 출금가능한 금액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20조									
거래가능 국가 및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가능 국가 :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홍콩, 캐나다 등 순차적으로 확대 예정 거래가능 종목 : 각 거래가능 국가의 우량주(블루칩 주식)로서 '해외주식 mini 신탁'에서 거래가능한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 거래가능 국가 및 종목은 당사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 	약관 제1조 제2항 약관 제6조 제1항									
거래가능 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채널별로 각각 가입 및 거래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셋증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앱 - 미래에셋증권과 제휴하여 본 상품의 가입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앱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									
주문 거래 단위	<p>주문 거래 단위는 금액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지시할 수 있으며, 주문(체결)가격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매매)단위 : 	약관 제1조 제2항 약관 제6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기준 : 최소 원화 1,000원부터 1원단위 - 수량기준 : 1주 미만일 경우 소수점 6자리 • 매수 : 금액기준으로 주문 가능 • 매도 : 금액기준, 수량기준으로 주문 가능 <p>※ 매도를 금액기준으로 주문하는 경우, 주문 금액을 수량으로 환산하여 주문처리하므로, 요청한 금액과 장중에 실제 체결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주문 지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가능 채널의 모바일앱을 통해서만 주문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 불가) 	약관 제6조 제1항
주문 지시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 시간 : 24시간 (한국시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접수시간 : 전일 04:01 ~ 당일 04:00까지 가능 - 주문처리시간 : 당일 04:01 ~ 익일 10:00까지 주문처리 및 체결/배분 처리 <p>※ 국내시장 휴장시 주문접수 및 처리(체결/배분)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주문 취소는 주문접수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p> <p>※ 주문접수 후 주문처리시점에 계좌의 상태가 변경될 경우 주문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p> <p>※ 서머타임 시간에는 거래시간을 한국시간 기준 1시간 앞당기므로 국가별 거래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주문가능금액 및 증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가능금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 내 주문가능 현금(현금성자산 포함) + 매도 시 결제예정금액 • 증거금(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주문 : 매수 증거금 100% - 매도주문 : 매도 증거수량 100% • 본 상품은 미수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문가능금액 100% 이내에서 주문가능) <p>※ 단, 주문결제 전 자전거래 과정에서 미수가 발생될 수 있으며, 미수변제를 위해 보유 종목이 자동 매도될 수 있습니다.</p>	약관 제6조 제1항 약관 제6조 제4항
결제 기준 시간	<p>각국의 주식시장 결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p> <p>다만, 외국과의 시차, 송금 및 수령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매수의 경우는 매수증권 입고 전에 매수대금이 출금되고, 매도의 경우에는 매도증권 인출 후에 매도대금이 입금될 수 있습니다.</p>	
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상품은 원화 금전으로만 설정 및 해지(입금, 출금)이 되므로, 해외주식 매매거래 또는 권리행사 등에 필요한 대금을 자 	

	<p>동으로 환전하여 투자하게 됩니다. 환전은 은행에서 제공받은 환율(매매기준율+스프레드)로 자동 신청되며, 익영업일에 환전 대금을 지급합니다. 단, 현지 또는 국내휴일 등으로 결제이연시 순연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 <table border="1"> <thead> <tr> <th>주문</th><th>체결</th><th>환전(원화→외화)</th><th>결제(외화입금)</th></tr> </thead> <tbody> <tr> <td>T일</td><td>T+1</td><td>T+2</td><td>T+3</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주문</th><th>체결</th><th>결제(외화입금)</th><th>환전(외화→원화)</th><th>원화입금</th></tr> </thead> <tbody> <tr> <td>T일</td><td>T+1</td><td>T+3</td><td>T+4</td><td>T+5</td></tr> </tbody> </table>	주문	체결	환전(원화→외화)	결제(외화입금)	T일	T+1	T+2	T+3	주문	체결	결제(외화입금)	환전(외화→원화)	원화입금	T일	T+1	T+3	T+4	T+5	
주문	체결	환전(원화→외화)	결제(외화입금)																	
T일	T+1	T+2	T+3																	
주문	체결	결제(외화입금)	환전(외화→원화)	원화입금																
T일	T+1	T+3	T+4	T+5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직접 행사하며, 권리발생 기준일에 보유한 고객의 잔고 비율에 따라 배정 및 분배합니다. 다만, 회사가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소수점수량으로 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매도하여 현금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단, 배정 전 계약해지 또는 탈퇴한 고객의 경우 해당권리의 지급은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 권리행사로 발생한 각종 세금, 그 밖의 부과금 등(이하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회사는 권리 지급분에서 우선 납부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u>배당주 및 무상주 등 주식으로 권리배정되는 경우는 필요경비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계약내보유한 현금자산으로 충당하거나 권리 주식을 매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u> • 권리를 통해 배정받는 주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본 계약에서 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매도 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신탁에서 거래가능한 해외주식 종목이 아닌 경우 2. 본 신탁에서 거래불가능한 유형(예, 채권 등)인 경우 • <u>권리행사로 인하여 매도하여 배정되는 경우 해당 매도금액은 해외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u> <u>자진 신고, 납부시 포함하여야 합니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 배정을 위해 지급일 전 주식의 거래중지, 출고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의 권리 지급이 현지 정보의 국내 전달과정에서 시차 또는 정보 전달 통신상의 문제 등으로 현지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의 권리 지급 통지가 늦을 경우 당일 지급을 못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 특성상 권리를 고객의 잔고 비율에 따라 배정 및 분배하는 과정에서 권리 지급이 현지 및 국내 금융사 보다 지연되거나 지급 내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및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증권사 거래수수료 및 해외유관기관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20%(주민세 포함22%)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별 조세 협약에 따라 현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납부방법 및 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외화증권 양도소득세 납부기준과 동일합니다. 	약관 제 17조

※본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